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 등으로 자율화하고,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안 제3조제1호 신설)
-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시행 중인 조달청, 경찰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추가(안 제4조)
- 다. ‘창업기업’의 인정기간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라. 공공기술의 이전 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통상실시 원칙을 삭제하고, 양도 또는 전용실시의 경우에는
기술 수요 기업이 균등한 기회를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26조)
마. 창업기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연구자 등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처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을
위한 내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26조의3 신설)
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수탁 업무에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 관
련 업무를 추가(안 제43조 제6호 신설)
사.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또는 대학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
회사 기술분야 전문인력 요건을 이공계 분야로 확대(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8. ~ 10. 1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4조 중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농촌진흥청, 기상청, 조달청, 경찰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창업기업)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공립학교”를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3제2항3호”를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25조의5의 제목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을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 등 현물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를 “기업·기관·단체(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거나”로,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허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업화할 목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6항제6호”를 “법 제24조제7항제6호”로 한다.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용(專用)

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진흥원 또는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기술의 제목, 용도 및 요지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지한 기간 내에 다른 기업 등이 동일 기술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 등이 제출한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이용자를 정할 수 있다.

⑦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에 관한 규정)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자등”이라 한다)의 창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자격
2. 창업기업의 범위 및 요건
3.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4.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 및 처

분 등

5. 공공연구기관의 창업기업 주식 취득 및 처분, 창업기업 주식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등
 6. 연구자등의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 겸임 또는 겸직
 7. 공공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정보의 사용 허락 및 사용료 징수
 8. 연구자등의 창업 또는 창업기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직무발명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연구자등의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4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5조의2,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감독에 관련된 업무

별표 1의 기술 분야란 제1호 중 “자연과학”을 “이학(理學)·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된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및 제3호 중 “자연과학”을 “이공계”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해당 조문란 중 “법 제35조의8제1항”을 “법 제35조의7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해당 조문란 중 “법 제35조의8제1항”을 “법 제35조의7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조문란 중 “법 제35조의8제1항”을 “법 제35조의7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조문란 중 “법 제35조의8제1항”을 “법 제35조의7제1항제1

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영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1. 2. (생략)	제3조(공공연구기관) ----- ----- ----- ----- -----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u>농촌진흥청 및 기상청</u> 을 말한다. <u><신 설></u>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 ----- ----- ----- ----- ----- ----- -- <u>농촌진흥청, 기상청, 조달청, 경찰청 및 산림청</u> ----- ----- 제4조의3(창업기업) 법 제2조제12

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

1.·2.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제3호-----

-----.

1. (현행과 같음)

2.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

제25조의5(출자회사에 대한 기술 등 현물출자) <삭 제>

<삭 제>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생략)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 ③ (생략)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 기업·기관·단체(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거나 -----
-----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업화할 목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을 양도하거나 전

<신 설>

<신 설>

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때에는 사전에 기술진흥원 또는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기술의 제목, 용도 및 요지 등을 15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지한 기간 내에 다른 기업 등이 동일 기술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 등이 제출한 기술의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술의 이용자를 정할 수 있다.

⑦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⑧ ----- 법 제24조제6항 -----

---. -----

-----.

⑨ 법 제24조제7항제6호-----

-----.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공공연구기관의 창업
촉진에 관한 규정) 법 제25조의
3제6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소
속 연구자 및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자등”이라 한다)의
창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자격
2. 창업기업의 범위 및 요건
3.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4. 연구자등의 창업기업 주식

	<u>(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취득 및 처분 등</u> 5. <u>공공연구기관의 창업기업 주</u> <u>식 취득 및 처분, 창업기업 주</u> <u>식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사</u> <u>용 등</u> 6. <u>연구자등의 기술지주회사, 출</u> <u>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u> <u>하기 위한 휴직, 겸임 또는 겸</u> <u>직</u> 7. <u>공공연구기관 보유 시설·장</u> <u>비·정보의 사용 허락 및 사</u> <u>용료 징수</u> 8. <u>연구자등의 창업 또는 창업</u> <u>기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u> <u>위하여 필요한 사항</u> 9. <u>직무발명을 활용한 연구자등</u> <u>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에</u> <u>대한 지원</u> 10. <u>그 밖에 연구자등의 창업촉</u> <u>진 및 창업기업 지원 등에 관</u> <u>한 사항</u>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 홍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3조(업무의 위탁) ----- ----- ----- -----.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35조의2, 제35조의6 및</u> <u>제35조의7에 따른 기술신탁관</u> <u>리업의 허가·감독에 관련된</u> <u>업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연 락 처	(044) 203 - 4536